

보험가입자에 의한 방화

송재철 <화재조사 전문가>

산업활동이 왕성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비중 높은 지능적 범죄의 대표적인 것이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이다.

그래서 보험금 사취목적의 범죄를 선진국형 범죄라고 하는 것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범죄의 검거율이 떨어지는데 따른 프로페셔널이 등장했고 우리나라에도 이 범죄가 심심치 않게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이다.

보험금 사취목적의 범죄는 생명, 해상, 교통, 의료, 화재,...(살인, 선박침몰, 교통사고, 장기치료나 의료수가 조작, 방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원한같은 단순 목적의 방화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의 방화나, 이유가 분명치 않은 종류의 연속 연쇄화재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차량연쇄방화와 같이 목적이나 동기가 뚜렷치 않은 것은 날로 각박해 지는 도시문명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비뚤어지는 인간성에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는 물론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가족끼리도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고립됨으로써 불평불만과 욕구불만을 해소시키지 못해 범죄(방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類)의 범죄는 현행법이 아니고서는 검거에 더욱 어려움이 있음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방화가 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화재 자체가 증거의 인멸이란 점에서 범죄자들에게 매력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현장조사만 우선 충분히 진행된다면 그 화재가 실화(失火)의 요인이 없는 화재의 경우 목적이나 동기까지는 직접 끄집어 낼 수는 없다하더라도 화재나 화력의 진행에 따른 연소성(燃燒性)으로 방화재료의 성상(性狀), 혹은 특성을 가릴 수가 있으므로 방화범죄가 쉽사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일단 보험을 가입해 본 사람이라면 보험을 가입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보험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은 확실하다.

보험의 종류(상품)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단 가입하면 보험금의 불입시마다 보험의 실효성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구체적인 사후의 처리나 결과는 분명히 예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권유자나 주위에서 귀동냥한 상식만으로 보험액 전액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방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같이 보험범죄(방화)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계량적 면에서 우선 자기소유의 피해예상 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특징일 뿐 아니라 피해실사에 높은 평가를 기대(실제 많은 사람들은 사후 벌금을 우려하여 실제피해가 줄어질 것을 기대)하는 등의 불안정성이 직감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 보험방화는 보험금이 피해액보다 적거나 같아서는 위험부담까지 감안할 때 수지적인 면에서 선뜻 행동에 옮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방화자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으며 회사의 형태로는 대형이나 중형회사보다는 소규모의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실질 개인회사로서 오너가 사업자금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방화하는 예가 많고, 보험금액도 경제성장에 따라 연대별로 비례적 증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화에 있어서 화재진행기대(火災進行期待)에 따른 심리적 특성이나 조급성 등이 공통적 현상으로 나타나 범죄자들의 결정적 취약점이 되어 다대한 일인 것이다.

보험방화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조사기관의 협조가 긴밀해야 한다.

보험회사등의 능동적 인식시키지는 아무래도 조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보험목적물이 지방에 있더라도 보험가입

은 중앙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지방에 진출해 있는 몇몇의 보험회사 대리점이나 영업망을 통해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것 만으로는 보험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보급시 세일즈맨의 전문적 보험지식의 숙지는 물론 정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유로 방법을 개선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회사별 실적위주에서 벗어나 목적물에 대한 적정가의 실사로 보험가의 객관화와 보험가입의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리드로 보험에서 말하는 Moral Risk의 유인(誘因)이 큰

원적으로 억제되도록 할 것과 보험회사별 재보험가입액(再保險加入額)한도 미만의 보험가입도 중복보험으로 인해 초과되는 내용이 재보험에서라도 확인 파악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됨으로써, 화재 발생과 동시에 상호 협조된다면 보험방화 억제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목점을 하는 M(32세)은 ㄷ 화재보험회사에 5천5백만원짜리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옆집 S상회에서 피해액 3천여원 밖에 안 되는 조그만 불이 났다.

M씨의 실제 피해는 없는데 화

재보험회사의 R시 지점 홍보부장 K란 자가 M씨를 교사하여 6백30만원의 피해가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주위 점포주 2명의 인우보증을 받아 4백30만원의 피해보상금(화재보험금)을 받게 되었고, K는 M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았다.

이에 재미를 얻은 M은 얼마 뒤 화재보험에 2천만원을 추가로 가입한 뒤에 소형 플라스틱병에 들은ライター 기름통 1상자(60개)를 9천6백원에 사다가 전 가족이 나간 틈에 자기의 점포 천장합판을 뜯은 후 옆집인 T점포쪽으로 넣어 놓고 화장지로 불을 지퍼 던졌으나 생각과 같이 불이 잘 붙어주질 않아서 소규모의 피해만 내고 소란만 떨게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M은 옆집 T점포에서 전기과열이 원인으로 불이 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보험금 재미를 또 보고자 보험회사의 K를 은밀히 만나 1백10만원을 건네 주었다.

그러나 현장 천장 위에 타다남은 합판 위에서ライター 기름통 8개와 휴지조각들이 발견되어 단서가 됨으로써 일체의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원이 가담한 보험금 사취목적의 방화는 흔치 않지만 가입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방화는 눈에 띄게 증가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검거 사례도 늘고 있다.

